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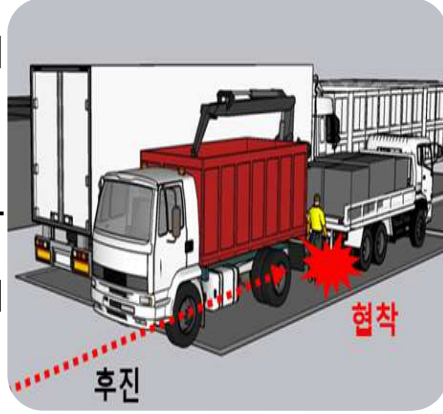


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협착



재해개요

2024. 06.00.(화) 08:40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000 사업장 내에서 재해자가 물품을 하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뒤에서 대기하던 중, 집게차가 후진하면서 화물자동차와 부딪혀 사이에 있던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



발생원인

1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미배치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나, 이를 미준수

예방대책

1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 통제 및 유도

- 사고발생 장소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로 보행자 또는 작업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 통제 및 유도

2 집게차 후방 카메라 정상 작동 조치 및 후방감지기능 강화

- 집게차에 설치되어 있는 후방 카메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여 후방감지기능 강화

※ 본 P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